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2018. 7. 5

개정: 2022. 4. 28

개정: 2022. 5. 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투자자 간의 정당한 사유없는 차별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그 외 업무 관련 법규(이하 “관련법규”라 한다)와 해당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의 구분) 이 지침에서 “수수료”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보수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 :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 나. 성과보수 :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 다. 판매보수 :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 라. 신탁업자 보수 :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마.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회사 운영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2. 수수료

가. 판매수수료 :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

나. 환매수수료 : 집합투자자가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

다.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 :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업무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 또는 투자일임재산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 그 투자자문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

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수수료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제4조(수수료의 부과기준)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비용과 수익의 수준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각 수수료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보수는 법 제86조, 동법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해당 투자설명서와 집합투자계약에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2. 판매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판매수수료는 납부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할 때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

제5조(집합투자업 수수료 부과절차) ① 회사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또는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 그 부과절차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는 새로운 유형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검토와 승인 등 신상품 개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다루는 상품개발위원회에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또는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다만 기존 상품과 운용상의 중요 변경이 없는 유사한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등을 신규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장의 합의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

제6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에 있어서 수수료 부과절차) ① 투자자문 수수료 또는 투자일임수수료의 수준 및 계산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투자일임·자문수수료 부과 기준]에 따르며, 수수료 관련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계약자산에 투자자와 합의한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수료 지급주기 및 지급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회사는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인상)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회사,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집합투자계약을 변경하는 경

우에는 미리 규약에서 정한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수익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설명의무) 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함께 이 지침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광고) ① 회사는 투자광고(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 제2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받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공시 및 통보) 회사가 이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한 보수와 수수료는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및 제30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비용과 판매수수료 현황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투자일임·자문 수수료 부과 기준

□ 투자일임 수수료 부과 기준

대상자산	유형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납부시기
금융투자상품	기본형	기본수수료	계약금액의 연 1.0%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혼합형	기본수수료	계약금액의 연 0.5%	
		성과수수료	기준수익률 초과분의 15%	계약종료(또는 해지) 또는 계약일로부터 일년이 도과한 날로 부터 7일 이내
	성과형	성과수수료	순자산총액(NAV)증가분의 20%	

*기준수익률=계약금액의 연 7.0%

□ 투자자문 수수료 부과 기준

대상자산	유형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납부시기
금융투자상품	기본형	기본수수료	계약금액의 연 1.0%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혼합형	기본수수료	계약금액의 연 0.5%	
		성과수수료	기준수익률 초과분의 15%	계약종료(또는 해지) 또는 계약일로부터 일년이 도과한 날로 부터 7일 이내
	성과형	성과수수료	순자산총액(NAV)증가분의 20%	

대상자산	유형	계약자산 규모	수수료율	납부시기
부동산	매각 및 매입 관련 자문	100억원 이하	계약자산의 1.5%	고객과 협의
		100억원초과 500 억원이하	계약자산의 1.3%	
		500억원초과	계약자산의 1.0%	

*기준수익률=계약금액의 연 7.0%

□ 투자일임·자문 수수료 산정 및 부과 방법

1. 투자일임·자문 기본수수료: 해당 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고객의 투자유형에 따라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계약자산의 규모에 따라 고객과 협의할 수 있다.
2. 투자일임·자문 성과수수료: 고객과 합의한 기준수익률 초과분에 대하여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징수하되, 자본시장법 제98조의 2(성과보수의 제한)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 성과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① 성과보수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이하 "기준지표등"이라 한다.)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
 - ②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또는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할 것.
 - ③ 그 밖의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3. 투자일임·자문 수수료율은 상기요율을 기준으로 하되, 사전에 마련된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계약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투자일임·자문 수수료의 납부
 - 투자일임·자문 기본수수료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성과수수료는 계약종료(또는 해지) 후 7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납입해야 한다. 단, 고객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계약기간 중 계약자산의 증감에 따른 수수료 산정
 - ① 계약기간 중 계약자산의 증감에 따른 기본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추가 징구 또는 환급한다.
 - 추가설정시 기본수수료: $(\text{추가설정금액} * \text{기본수수료율}) * \text{잔존계약기간} / 365$
 - 일부해지시 기본수수료: $\text{기납입 기본수수료} - (\text{일부해지금액} * \text{기본수수료율}) * \text{잔존계약기간} / 365$
 - ② 계약기간 중 계약자산의 증감에 따른 성과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성과수수료: $\text{초과수익} * \text{성과수수료율}$
 - 초과수익: $\text{계약금액평잔} * \{\text{수익률} - (\text{기준수익률} * \text{운용일수} / 365)\}$